



전과 규칙

규정번호	3-3-4
제정일자	1997.05.01
개정일자	2020.03.01
개정번호	Ver.7
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의 목적은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내 전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과 신청) ① 전과의 신청은 학칙 제27조 제1항에 해당되는 학년 및 학기 개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.

② 전과의 신청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전과 신청 자격은 각 학부(과)에서 정하고 총장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.

제3조(전과 인원) 학과별 전과 인원은 각각 전입 학과별로 정하되 총장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. 다만,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전과의 심사 및 허가) ① 전과 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를 병합한 방법에 의해 전입학과별로 정하되 총장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.

1. 재학기간중 성적
2. 전출학과 지도교수 의견서
3. 전입학과 교수 면접

② 전과의 허가는 학기 개시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.

제5조(전과 제한) ①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 또는 주간 학과에서 야간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.

②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.

③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가 3년제 학과로 전과한 경우는 수업년한을 2년제로 선택할 수 없으며, 전과와 동시에 수업년한을 3년제로 연장한 것으로 한다.

④ 수업년한이 3년제인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.

⑤ 편입학생의 전과는 불허한다. <신설 2020.03.01.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과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<개정 2020.03.01.>

제6조(이수학점) ① 기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은 전부 인정한다.

② 전공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거나 전입학과 교육과정의 대체 가능과목에 한해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되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규칙의 대체) 기 시행중인 전공변경 규칙은 폐지하고 본 규칙으로 대체하여 시행한

다.

제8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